



해양수산부

#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                                             |       |                        |
|---------------|---------------------------------------------|-------|------------------------|
| 보도 일시         | 2022. 8. 26.(금) 조간<br>2022. 8. 25.(목) 11:00 | 배포 일시 | 2022. 8. 25.(목) 06:00  |
| 담당 부서<br><총괄> | 어촌양식정책관<br>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 책임자   |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
|               |                                             | 담당자   | 사무관 홍성현 (044-200-5641) |

## **추석 계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 해수부, 해경,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8.29(월)부터 11일간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대상품목 : (유통·판매·가공 등) 모든 수산물

(음식점 내 표시)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개 품목

\*\* 대상품목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꽂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묵장어, 활방어 등 17개 품목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11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 명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음식점, 유통·판매업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왔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br><총괄> | 해양수산부<br>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 책임자 | 과 장 | 최장원 (044-200-5940) |
|               |                      | 담당자 | 사무관 | 홍성현 (044-200-5481) |
| 담당 부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br>수산물안전과 | 책임자 | 과 장 | 장옥진 (051-400-5690) |
|               |                      | 담당자 | 사무관 | 오영진 (051-400-5650)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br>품질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강거영 (051-400-5750) |
|               |                      | 담당자 | 주무관 | 윤권식 (051-400-5796) |

## 참고1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요

□ 개요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도입시기 : 수입수산물('94), 국산('95), 가공품('96), 소금('11) / 음식점 표시('12년)

□ (대상품목) 일반 유통·판매업 : 모든 수산물, 음식점 : 15개 품목

| 구 분                | 대 상 품 목                                                                                                           |
|--------------------|-------------------------------------------------------------------------------------------------------------------|
| 유통·판매업<br>(모든 수산물) |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                                                                                    |
| 음식점<br>(15개 품목)    |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br>※ 다만,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 |

\* '12년(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 '13년(고등어, 명태, 갈치)  
→ '17년(오징어, 꽃게, 참조기) → '20년(다랑어, 아귀, 주꾸미)

□ (대상업체) 약 146만 개소(유통, 음식점, 통신판매)

| 합 계   | 유통·판매·<br>가공업소* | 음식점**<br>(일반, 휴게, 집단급식소 등) | 통신 판매업체 |
|-------|-----------------|----------------------------|---------|
| 146만개 | 44만개            | 89만개                       | 13만개    |

\* 백화점·할인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TV홈쇼핑·인터넷·신문 등 모두 포함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휴게·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처벌기준)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지자체, 해경청 등

①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표시, 혼동 우려 또는 혼동 목적으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품목과 혼합 등

- (5년 내 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 (2년간 2회 이상) 위반 금액의 5배 과징금(최고 3억원 이하)

② 미표시의 경우, ①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②음식점은 품목별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 과태료 부과

※ 최근 3년('19~'21) 위반 현황 : 미표시 1,642건(2.2억), 거짓표시 600건(37.5억)

## 참고2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개요

□ 개요 (법적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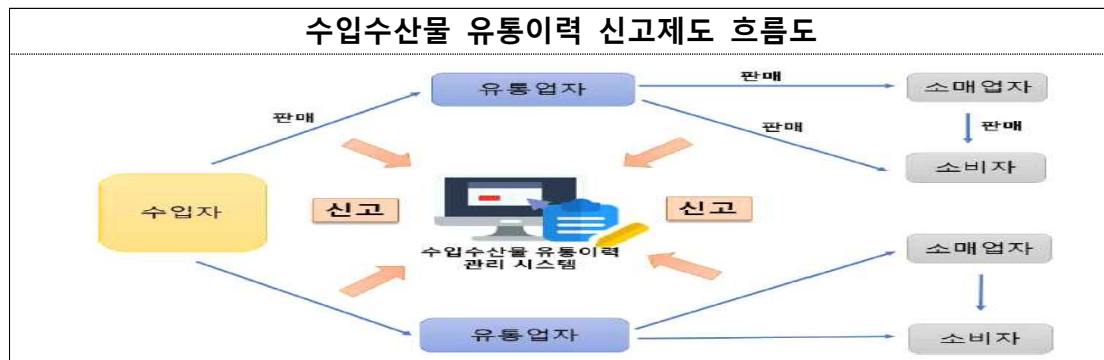
○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로 업무 이관('20.10.1)

□ (대상품목) 17개 품목(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

| 대 상 품 목                                                                                         |
|-------------------------------------------------------------------------------------------------|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꽂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묵장어, 활방어 |

□ 업무 프로세스



□ (처벌기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반행위                | 위반횟수별 과태료(단위 : 만원) |     |     |     |
|---------------------|--------------------|-----|-----|-----|
|                     | 1회                 | 2회  | 3회  | 4회  |
| 미신고                 | 50                 | 100 | 300 | 500 |
| 거짓신고                | 100                | 200 | 400 | 500 |
|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 50                 | 100 | 300 | 500 |
| 조사·열람·수거 등 거부·방해·기피 | 50                 | 100 | 300 | 300 |

### 참고3

###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사진



[사진1]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사진



[사진2]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사진